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204

발의연월일: 2025. 4. 29.

발 의 자:조승래・박선원・복기왕

민형배 • 이해민 • 김 윤

황정아 • 박용갑 • 이정문

강선우 • 한준호 • 장철민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의안은 법률안, 결의안 및 건의안 등으로 구성되는데,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와연서한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.

또한, 법률안은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 할 때는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·건의안 등도 여야 간 합의에 따라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법률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협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에 적용되도록 규정

하여,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79조제3항). 법률 제 호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제3항 중 "법률안"을 각각 "의안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표발의의원 명시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발의하는 의안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9조(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)	제79조(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)		
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의원이 <u>법률안</u> 을 발의할 때	③ <u>의안</u>		
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			
구분하되, <u>법률안</u> 제명의 부제	<u>의안</u>		
(副題)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			
재한다.			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		